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가 '14년부터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10월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610명 → 1,620명(+10명)

나. 직종별 정원조정

1) 일반직 : 1,572명 → 1,581명(+9명)

가) 6급이하 : 1,472명 → 1,481명(+9명)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4명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6명

- 자연감소 정원 조정 : 일반직 → 지도직

2) 지도직 : 33명 → 34명(+1명)

- 농기계 전담인력 확충 : 지도사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3)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 지침

(안전행정부)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안전행정부)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운영

1) 정원조정에 따른 연간 소요경비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10명이며”를 “1,620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82명”을 “1,59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0	1,620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581	1,581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9	29	3	4	4	12	27
6급이하 소계	1,481	1,481					
전문경력관 소계	10	10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4	34					
지도관	3				3		
지도사	31	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610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20명</u> 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82</u> <u>명</u>	1. ----- <u>1,592</u> <u>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소요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10명 증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와 '14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나.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10명을 증원할 경우 '14년 644,320천원을 포함하여 '18년까지 3,333,01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	451,024	458,691	466,489			1,376,204
	소계(a)	451,024	458,691	466,489			1,376,204
세출	인건비(b)	644,320	655,273	666,413	677,742	689,264	3,333,012
□ 총 비용(a-b)		193,296	196,582	199,924	677,742	689,264	1,956,80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국 비		451,024	458,691	466,489			1,376,204
시 비		193,296	196,582	199,924	677,742	689,264	1,956,808
합 계		644,320	655,273	666,413	677,742	689,264	3,333,012

5. 부대의견

가. 재원조달 방안 중 '14년도 인건비의 7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15년 이후 인건비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별도 검토할 계획이나, 기존 복지인력 충원 시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를 참고하여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6. 작성자

안전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장정수(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대상

가. 공무원 정원을 10명을 증원

2. 비용추계 방법

가. 1인당 인건비 기준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14년도 총액인건비 1인당 단가를 기준 적용

나.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년도 기준인 1.7%를 적용

다. 산출내역

○총 재정소요액 : 3,333,012천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재정소요액	644,320	655,273	666,413	677,742	689,264	3,333,012

- '14년도 재정소요액 = '14년 1인당 인건비 기준액 × 정원 증원
- 64,432천원 × 10명 = 644,320천원
- '15년 이후 재정소요액 = 전년도 재정소요액 + (전년도 재정소요액 × 1.7%)